

암 산정특례 등록 시 오류사례

□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

-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(검사항목 및 기준)을 충족하여 확진한 환자가 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('19.3월)
 - 암 질환별로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 제시,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환자는 예외기준 마련 운영
- 암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중 환자의 신체 상태가 등록기준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예외 적용 기준을 확인하여 등록함
 - 암 산정특례 등록 예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(환자의 신체 상태에 따른 예외 적용이며 임의로 검사기준을 규정할 수 없음)

□ 암 산정특례 예외적용 다빈도 오류 사례

- 고령, 환자 조직(세포)학적 검사 거부로 예외적용 등록
 - 환자가 조직(세포)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신체적 상태인 경우로 예외등록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만 등록가능
- 영상검사로 암 확인, 조직검사 시행예정 등으로 등록
 - 환자상태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조직검사를 생략하는 경우 등록 불가
 - 영상검사로는 암 질환이 의심되나 조직검사 시행이 불가하여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등록 불가
 - 영상검사만으로 확진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등록기준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 불인정
-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검사받은 검사결과로 재등록
 -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(종료3개월 전부터 종료시점) 재등록 시에도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재등록 가능하나 특례적용기간 검사결과로 확진 또는 검사 없이 확진 재등록할 수 없음

- (재등록)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유효

- ❖ 재등록 대상은 잔존암, 전이암이 있는 경우 또는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, 암조직의 제거·소멸을 목적으로
- ① 수술, ② 방사선·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③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이며,
- ❖ 재등록 시에도 등록기준 검사를 실시 후 확진 하여야함

○ 등록기준 검사결과 확인 전 확진 등록

- 등록기준 검사의 결과 확인 전 환자의 내방일자로 확진 산정특례 등록 불가

○ 기타

-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잔존암, 전이암이 없는 상태에서 재등록 불가
- 조직(세포)학적 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환자를 예외적용 등록검사로 확진등록 불가
- 외국의료기관 검사결과로만 확진 등록 불가
- 재발예방을 위한 항암제 투여를 이유로 재등록 불가